

다문화가족의 결혼 및 가족생활과 정책방안¹⁾

Findings from the Marriage and Family Life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조애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에 나타나는 문제는 더 이상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문제로서 이들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고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결혼실태와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모국가족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배우자 만나는 경로 상의 문제와 유배우이면서 가정불화로 인한 비동거율이 높고, 혼인유형에 있어 재혼가족의 비율이 높으며, 모국가족과의 연결망 확대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올바른 부부관계 상 정립 및 전문적인 상담 확대·실시, 재혼가족 대상의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관련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별 국제결혼 준비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정보제공 및 사전교육 시스템 구축,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실시 등이 요구된다.

1. 서론

그동안 동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들의 이주와 함께 이질적 문화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²⁾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총 혼인건수 중 외국인과의 국제결

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현재 10.8%³⁾로 증가하여 외국인과의 국제결혼도 일반적인 결혼유형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글로벌시대, 전 지구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국제교

1) 본고는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중 정기간·조애제의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2) 박기관, 「다문화시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과제와 지원방안」, 『지방자치』, 통권 246호, 미래한국재단, 2009. 03, pp. 108~111.

3) 통계청(2010)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총 혼인건수 332,090건 중 외국인과의 결혼건수는 11,605건으로 3.5%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총 309,759건 중 33,300건으로 10.8%를 차지함. 또한 외국인과의 결혼건수 중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75.5%를 차지함(통계청, 2009년 혼인통계 결과, 2010).

류와 인구이동의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의 요인과 함께 성비 불균형과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이 빈약한 남성들의 결혼난을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⁴⁾ 실제로 최근의 연구⁵⁾에서도 국제결혼은 적령기를 넘긴 고연령, 저학력, 초혼보다는 재혼, 도시보다는 농촌, 그리고 낮은 경제적 수준의 남성에게서 빈번히 일어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결혼이민자의 상당수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집단적으로 결혼이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결혼자체가 목적인 중매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윤추구에 급급한 결혼중개업체들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의 왜곡과 결혼을 부추기는 행위들로 인하여 결혼당사자들은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전 두사람의 애정이나 결혼의 의미, 결혼 이후의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결혼이후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⁶⁾

또한 이들 결혼이민자는 결혼 이후 부부간의 언어차이로 인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문제,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에 의한 가정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사회적 정보로부터의 소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 결혼생활 적응의 문제와 사회생활 유

지 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⁷⁾

따라서 본 고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양상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 가족관계, 즉, 부부관계, 자녀관계, 배우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다문화가족의 결혼실태

1) 배우자 만난 경로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는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 친구·동료의 소개, 종교기관을 통해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경우가 27.0%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친척의 소개(24.1%)’, ‘친구·동료의 소개(22.9%)’, ‘스스로(15.8%)’ 등의 순이었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에 의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동료의 소개’ 25.7%, ‘가족·친척의 소개’ 14.1%의 순이었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비율은 2.1%에 불과하였다⁸⁾.

4) 김영주, 「한국의 다문화 현황과 사회적 과제」, 『계간 사회복지』, 2007 겨울호, 통권 175호, pp. 6~21.

5) 김경신,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한국가족상담학회·한국가족치료학회 자료집』, pp.82~120, 2006; 윤형숙, 「국제결혼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2004.

6)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2006, pp. 159~193.

7) 장은정, 박정윤, 「결혼이민자 가정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련 가치관 및 문화적응 태도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009년 21(2), pp. 1~27.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은 ‘가족·친척의 소개’, ‘친구·동료의 소개’, ‘스스로’의 순으로, 중국 한족은 ‘친구·동료의 소개’, ‘가족·친척의 소개’, ‘스스로’, ‘결혼중개업체’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베트남(66.6%), 몽골(32.1%), 캄보디아(84.2%)는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일본, 필리핀, 태국은 ‘종교기관’을 통한 비율이 높았다. 북미·호

주·서유럽 등의 선진국은 ‘스스로(56.2%)’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많았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는 일본출신만이 ‘종교기관’에 의해 배우자를 만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중국 조선족, 한족, 북미·호주·서유럽 등은 자기 ‘스스로’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현 배우자 만난 경로

(단위: %, 명)

구분	결혼 중개업체	가족, 친척의 소개	친구, 동료의 소개	종교기관을 통해	스스로	기타	계(수)
여성 결혼이민자	27.0	24.1	22.9	6.7	15.8	3.5	100.0(108,771)
중국(조선족)	8.7	40.1	26.7	1.1	20.2	3.3	100.0(32,544)
중국(한족)	20.8	21.6	31.8	0.7	20.8	4.3	100.0(30,809)
베트남	66.6	17.4	10.6	0.7	3.1	1.6	100.0(22,475)
필리핀	19.6	16.1	22.9	31.6	6.4	3.4	100.0(7,349)
몽골	32.1	14.0	25.7	5.5	19.2	3.5	100.0(1,667)
태국	9.7	18.4	23.6	25.0	15.5	7.8	100.0(1,571)
캄보디아	84.2	7.1	4.5	1.8	1.8	0.5	100.0(2,385)
일본	1.4	2.6	6.2	71.8	13.2	4.9	100.0(4,701)
북미·호주·서유럽	0.0	9.4	22.8	5.8	56.2	5.8	100.0(434)
기타	19.8	11.7	21.8	5.2	33.0	8.5	100.0(4,836)
남성 결혼이민자	2.1	14.1	25.7	3.7	46.0	8.4	100.0(9,082)
중국(조선족)	2.5	25.9	28.6	1.3	36.5	5.1	100.0(2,758)
중국(한족)	3.1	18.0	28.4	1.6	38.7	10.2	100.0(2,304)
일본	1.5	5.9	18.5	36.4	30.2	7.4	100.0(324)
북미·호주·서유럽	0.9	3.0	25.8	2.9	57.8	9.6	100.0(1,683)
기타	1.6	3.9	19.6	5.0	59.9	10.0	100.0(2,013)

주: 1) 1990년 이후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8) 여성가족부(2006)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가족·친구 소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결혼중개업체 (19.5%), 스스로(17.2%), 종교기관(15.4%) 등이었으며, 남성 결혼이민자는 스스로가 45.8%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친구 소개 44.9%, 종교기관 3.7%, 결혼중개업체 0.9% 등이었음.

2) 현 혼인상태

전체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는 96.0%가 유배우자이었고, 이혼 3.2%, 사별 0.8%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유배우율이 95.9%로 대부분이 유배우자이었고, 이혼 3.3%, 사별 0.8%이었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 보다 유배우율(97.1%)이 높았으며, 이혼과 사별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았다.

(98.0%)가 더 높았다. 유배우자이면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는 남녀 결혼이민자 모두 취업 때문이 가장 많았고(여성: 46.3%, 남성: 45.1%), 그 외 가정불화, 자녀교육 등의 이유이었다. 이 중 가정불화로 인한 비동거(여성: 21.2%, 남성: 19.4%)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들 결혼이민자들은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가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3) 동거율 및 비동거 이유

유배우자이면서 배우자와의 동거율은 남성 결혼이민자(96.9%)보다는 여성 결혼이민자

4) 혼인유형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와의 결혼횟수를 기준으로 부인과 남편의 혼인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2. 결혼이민자의 현 혼인상태¹⁾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이혼	사별	계(수)
전체	96.0	3.2	0.8	100.0(119,382)
여성 결혼이민자	95.9	3.3	0.8	100.0(110,180)
남성 결혼이민자	97.0	2.6	0.3	100.0(9,202)

주: 1) 1990년 이후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3. 유배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의 동거율 및 비동거 이유¹⁾

(단위: %, 명)

구분	배우자와의 동거율	(분석대상 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				계(수)
			취업	자녀교육	가정불화	기타	
전체	97.9	(112,200)	46.1	7.6	20.9	25.4	100.0(2,132)
여성 결혼이민자	98.0	(103,465)	46.3	7.0	21.2	25.5	100.0(1,879)
남성 결혼이민자	96.9	(8,736)	45.1	11.5	19.4	24.1	100.0(253)

주: 1) 1990년 이후 결혼한 이민자로서 유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여성 결혼이민자는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이 65.6%, 부인 초혼, 남편 재혼 9.6%, 부인 재혼, 남편 초혼 7.2%, 부인, 남편 모두 재혼 17.6%로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부인 초혼, 남편 초혼과 부인 초혼, 남편 재혼인 비율이 높았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여성보다 부인 재혼, 남편 초혼(12.7%)과, 부인, 남편 모두 재혼인 비율(23.8%)이 높았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남녀 결혼이민자 모두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인 비율은 낮았고, 부인 초혼, 남편 재혼과 부인 재혼, 남편 초혼, 부인, 남편 모두 재혼인 비율은 높았다⁹⁾.

혼인상태별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유배우와 사별은 부인, 남편 모두 초혼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혼은 부인, 남편 모두 재혼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유배우는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인, 남편 모두 재혼인 비율이 높았다. 이혼은 부인, 남편 모두 재혼인 비율이 50.5%이었고, 사별인 경우에도 부인, 남편

모두 재혼인 비율이 71.4%나 되어 여성 결혼이민자와 차이를 보였다.

5) 가족해체

(1) 혼인 후 이혼·사별까지의 기간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 후 이혼·사별까지의 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4.7년으로 최근에 결혼한 이민자가 많아 결혼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혼인 후 이혼·사별까지의 기간이 길었다(여성: 4.8년, 남성: 3.8년).

배우자를 만난 방법별 혼인부터 이혼·사별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 4.1년으로 가장 짧았고, ‘종교기관을 통해’ 만난 경우 가장 길었다(6.5년). 남성 결혼이민자도

표 4.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별 혼인유형

(단위: %, 명)

구분	여성 결혼이민자					남성 결혼이민자				
	부인, 남편 모두 초혼	부인 초혼, 남편 재혼	부인 재혼, 남편 초혼	부인, 남편 모두 재혼	계(수)	부인, 남편 모두 초혼	부인 초혼, 남편 재혼	부인 재혼, 남편 초혼	부인, 남편 모두 재혼	계(수)
전체	65.6	9.6	7.2	17.6	100.0(107,215)	57.6	5.9	12.7	23.8	100.0(8,941)
유배우	66.9	9.5	6.9	16.6	100.0(103,057)	58.5	5.9	12.6	23.0	100.0(8,704)
이혼	31.2	11.5	13.9	43.5	100.0(3,301)	25.9	4.2	19.4	50.5	100.0(216)
사별	43.1	8.2	11.0	37.8	100.0(857)	28.6	0.0	0.0	71.4	100.0(21)

주: 1) 1990년 이후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9)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편,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는 76.3%이었으며, 부인 초혼, 남편 재혼 4.6%, 부인 재혼, 남편 초혼 6.3%, 부인, 남편 모두 재혼 12.9%이었음(통계청, 2008).

표 5. 결혼이민자의 결혼 후 이혼, 사별까지의 기간¹⁾

(단위: 명, %, 년)

구분	이혼, 사별까지의 기간					계(수)	평균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전체	28.9	24.2	25.7	7.4	13.8	100.0(4,820)	4.7
여성 결혼이민자	28.1	24.5	26.2	7.5	13.7	100.0(4,548)	4.8
남성 결혼이민자	42.6	19.1	18.0	4.8	15.4	100.0(272)	3.8

주: 1) 1990년 이후 결혼한 이민자로서 이혼, 사별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 3.0년으로 가장 짧았으며, ‘친구·동료 소개’ 3.1년, ‘기타’ 방법 3.4년, ‘가족·친척의 소개’ 3.9년, 자기 ‘스스로’ 4.1년, ‘종교기관을 통해’ 6.8년으로 종교기관을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가장 길었다. 이는 최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내에 결혼이 이루어짐으로

표 6. 이혼, 사별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만난 방법별 결혼 후 이혼, 사별까지의 기간

(단위: 명, %, 년)

구분	이혼, 사별까지의 기간					계(수)	평균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여성 결혼이민자	28.3	24.5	26.3	7.6	13.3	100.0(4,416)	4.8
결혼중개업체	32.7	26.9	18.0	5.8	16.6	100.0(651)	4.1
가족·친척의 소개	27.8	21.5	29.8	9.6	11.4	100.0(1,303)	5.1
친구·동료의 소개	33.7	26.9	22.2	4.6	12.5	100.0(1,471)	4.2
종교기관을 통해	14.6	14.6	38.2	15.1	17.5	100.0(212)	6.5
스스로	19.7	27.7	31.1	8.0	13.5	100.0(614)	5.2
기타	16.4	18.2	33.9	14.5	17.0	100.0(165)	5.9
남성 결혼이민자	42.8	18.8	18.1	4.8	15.5	100.0(271)	3.8
결혼중개업체	42.9	0.0	28.6	0.0	28.6	100.0(7)	3.0
가족·친척의 소개	41.6	10.4	28.6	2.6	16.9	100.0(77)	3.9
친구·동료의 소개	53.4	28.8	6.8	0.0	11.0	100.0(73)	3.1
종교기관을 통해	0.0	0.0	100.0	0.0	0.0	100.0(6)	6.8
스스로	44.6	17.4	13.0	12.0	13.0	100.0(92)	4.1
기타	6.3	37.5	12.5	0.0	43.8	100.0(16)	3.4

주: 1) 1990년 이후 결혼한 이민자로서 이혼, 사별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써 결혼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2) 이혼·별거 이유

이혼·별거 이유로는 ‘성격차이’ 29.4%, ‘경제적 무능력’ 19.0%, ‘외도’ 13.2%, ‘학대와 폭력’ 12.9%,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9.8%, ‘음주 및 도박’ 8.7%,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7.0% 등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성격차이, 경제적 무능력, 학대·폭력을, 남성 결혼이민자는 성격차이, 외도,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순으로 이혼·별거 이유를 들었다. 특히 학대·폭력은 여성 결혼이민자만이 이혼·별거 이유로 들고 있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학대·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성격차이(44.7%)에 의한 이혼·별거가 가장 많았으며, 외도,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경제적 무능력 등의 순이었다.

자녀수별 이혼·별거 이유로는 자녀가 없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별

거가 29.0%이었으며, 경제적 무능력 19.2%, 학대와 폭력 14.8%, 외도 13.8%의 순이었으며, 자녀가 1명인 결혼이민자도 성격차이(28.3%), 경제적 무능력(20.2%),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11.8%) 순으로,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결혼이민자는 경제적 무능력(26.1%), 성격차이(25.4%), 심각한 정신적 장애 및 기타(12.4%) 순으로 이혼·별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1명 이하인 경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별거율이 높고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이혼·별거한 비율이 높았다.

자녀가 없는 남성 결혼이민자는 성격차이(51.7%), 외도(23.3%), 경제적 무능력(9.2%) 순으로, 자녀가 1명인 남성 결혼이민자는 성격차이(44.7%), 심각한 정신적 장애 및 기타(34.2%), 외도(10.5%) 순으로,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성격차이(78.9%), 경제적 무능력(10.5%), 음주 및 도박(10.5%) 순이었다.

배우자를 만난 방법별로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결혼중개업체’, ‘가족·친척의 소개’, ‘친구·동료의 소개’, 본인 ‘스스로’ 배우자를 만난 경우 모두 성격차이를 주요 이혼·별거 이유로 지적한 반면, ‘종교기관을 통해’ 배우자를

표 7. 이혼·별거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계(수)
전체	13.2	29.4	7.0	19.0	12.9	8.7	9.8	100.0(3,666)
여성 결혼이민자	12.7	28.4	7.2	19.7	13.7	8.8	9.4	100.0(3,440)
남성 결혼이민자	20.4	44.7	4.9	8.0	-	6.6	15.5	100.0(226)

주: 1) 1990년 이후 결혼한 이민자로서 이혼, 별거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8. 이혼·별거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계(수)
여성 결혼이민자	12.7	28.5	7.5	20.1	13.3	9.1	8.8	100.0(2,971)
없음	13.8	29.0	6.3	19.2	14.8	8.5	8.4	100.0(1,919)
1명	11.3	28.3	11.8	20.2	10.2	9.9	8.3	100.0(761)
2명 이상	9.3	25.4	4.5	26.1	11.7	10.7	12.4	100.0(291)
남성 결혼이민자	18.1	53.1	3.4	7.9	-	4.5	13.0	100.0(177)
없음	23.3	51.7	2.5	9.2	-	5.0	8.3	100.0(120)
1명	10.5	44.7	7.9	2.6	-	-	34.2	100.0(38)
2명 이상	-	78.9	-	10.5	-	10.5	-	100.0(19)

주: 1) 1990년 이후 결혼한 이민자로서 이혼, 별거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만난 경우 경제적 무능력을 주요 이혼·별거 이유로 지적하였다. 남성 결혼이민자는 ‘가족·친척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난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를 주요 이유로 지적하였고, 그 외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난 경우에는 성격차이를 이혼·별거의 주요 이유로 지적하였으며, 특히 본인 스스로,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별거 비율이 더욱 높았다.

3.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1) 가족구성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만 구성된 가족이 3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25.0%로 많았다.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의 가족은 ‘부부’ 가족이 41.6%로 가장 많았고, ‘부부+자녀’ 가족이 39.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부부+자녀+배우자 가족’과 같이 사는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이 17.2%로 남성 결혼이민자의 4.4%보다 월등히 높은 점이 특징적이었다. 자녀 없이 부부가 배우자 가족과 동거하는 결혼이민자들까지 포함한다면 배우자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은 여성 27.5%, 남성 8.4%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족 중 부부와 부모가 동거하는 비율이 10.1%¹⁰⁾인 것에 비해, 비록 이번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비율까지 포함한 것이긴 하지만, 여성 결혼이민자가 시부모나 남편의 형제·자매와

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5.

표 9. 이혼·별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만난 경로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계수
여성 결혼이민자	12.7	28.3	7.4	19.8	13.7	8.8	9.3	100.0(3,352)
결혼중개업체	14.7	26.1	7.7	17.8	18.4	7.5	7.9	100.0(495)
가족·친척의 소개	10.2	35.5	7.3	20.4	11.1	6.4	9.1	100.0(981)
친구·동료의 소개	12.1	26.9	5.9	20.6	16.0	11.5	7.1	100.0(1,157)
종교기관을 통해	8.0	18.4	14.9	23.0	17.2	4.6	13.8	100.0(87)
스스로	19.0	23.9	8.5	18.0	10.1	9.1	11.5	100.0(506)
기타	7.1	17.5	11.1	21.4	7.1	9.5	26.2	100.0(126)
남성 결혼이민자	20.1	44.5	5.2	7.9	-	7.0	15.3	100.0(229)
결혼중개업체	40.0	60.0	-	-	-	-	-	100.0(5)
가족·친척의 소개	19.0	20.6	3.2	14.3	-	3.2	39.7	100.0(63)
친구·동료의 소개	31.9	31.9	-	10.1	-	20.3	5.8	100.0(69)
종교기관을 통해	-	66.7	-	-	-	-	33.3	100.0(6)
스스로	13.9	70.8	11.1	1.4	-	-	2.8	100.0(72)
기타	-	64.3	14.3	7.1	-	-	14.3	100.0(14)

주: 1) 1990년 이후 결혼한 이민자로서 이혼, 별거 결혼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10. 결혼이민자의 가족구성

(단위: %, 명)

구분	본인	본인+ 자녀	부부	부부+ 본가족	부부+ 배우자가족	부부+ 자녀	부부+ 자녀+ 본가족	부부+ 자녀+ 배우자가족	계수 ¹⁾
전체	3.3	2.7	26.3	1.4	9.7	36.7	3.7	16.1	100.0(129,967)
여성 결혼이민자	3.1	2.8	25.0	1.4	10.3	36.5	3.8	17.2	100.0(109,734)
남성 결혼이민자	5.2	1.4	41.6	1.8	4.0	39.1	2.4	4.4	100.0(9,546)

주: 1)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가중치 적용한 수치임.
 2) 가족구성에서 응답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이외에 기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범주를 구분한 것임.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동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 가운데 사별 또는 이혼하여 현재 자녀와 살고 있는 가족은 각각 58.2%, 42.3%인데 비해,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그 비율이 26.4%, 20.0%로 훨씬 낮았다. 따라서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더 심각하게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가족관계 만족도

결혼생활에 있어 부부, 자녀, 부모와의 관계 등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는 전체 결혼생활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러한 점

에서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¹¹⁾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결혼이민자가 모두 높았으며, 성별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네 가지 유형의 가족관계 중에는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이민자, 일반 한국인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들

표 11.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별 가족구성

(단위: %, 명)

구분	본인	본인+ 자녀	부부	부부+ 본가족	부부+ 배우자가족	부부+ 자녀	부부+ 자녀+ 본가족	부부+ 자녀+ 배우자가족	계(수) ¹⁾
여성 결혼이민자	3.1	2.8	25.0	1.4	10.3	36.5	3.8	17.2	100.0(109,734)
유배우	1.1	1.2	26.0	1.5	10.6	37.9	3.9	17.8	100.0(105,646)
사별	41.8	58.2	0.0	0.0	0.0	0.0	0.0	0.0	100.0(981)
이혼	57.7	42.3	0.0	0.0	0.0	0.0	0.0	0.0	100.0(2,998)
남성 결혼이민자	5.2	1.4	41.6	1.8	4.0	39.1	2.4	4.4	100.0(9,546)
유배우	2.6	0.9	43.0	1.9	4.1	40.4	2.5	4.6	100.0(9,237)
사별	73.6	26.4	-	-	-	-	-	-	100.0(53)
이혼	80.0	20.0	-	-	-	-	-	-	100.0(180)

주: 1)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수치임.

2) 가족구성에서 응답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이외에 기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범주를 구분한 것임.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1) 결혼이민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와 동일하게 문항을 구성하였음.

과의 관계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이런 경향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모두 공통적이었다. 남성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매우 만족' 하는 비율이 65.7%인데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는 36.2%이었으며, 이는 한국인 남성 33.8%, 한국인 여성 23.7%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매우 만족' 하는 비율은 29.3%(평균 3.85점)이나, 남성 결혼이민자들이 장인·장모와의 관계에서 '매우 만족' 하는 비율은 44.7%(평균 4.18점)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경우, 여성들이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매우 만족' 하

는 비율은 16.4%(평균 3.50점), 남성은 여성보다 조금 높은 23.6%(평균 3.75점)로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7.2%p 낮게 나타났다.

(1) 배우자 관계 만족도

배우자를 만난 경로가 '결혼중개업체'인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난 경우보다 낮았으며,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결혼유형에 따라서는 '부부 모두 초혼'일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인 재혼, 남편 초혼'인

표 12.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유형별 관계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여성						평균 ²⁾	남성						평균 ²⁾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계(수) ¹⁾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계(수) ¹⁾	
결혼이민자														
배우자 관계	36.2	37.6	22.1	3.1	1.1	100.0 (108,920)	4.05	65.7	26.2	7.7	0.2	0.2	100.0 (9,537)	4.40
자녀관계	55.4	32.4	11.1	0.8	0.3	100.0 (69,622)	4.42	65.7	26.2	7.7	0.2	0.2	100.0 (4,851)	4.57
배우자의 부모 관계	29.3	34.5	30.2	4.1	1.8	100.0 (6,365)	3.85	44.7	32.7	19.6	2.0	0.9	100.0 (6,365)	4.18
배우자의 형제·자매관계	25.7	33.5	35.1	3.8	1.9	100.0 (97,348)	3.77	40.2	32.7	23.4	2.4	1.2	100.0 (7,404)	4.08
한국인 일반 ³⁾														
배우자 관계	23.7	37.0	30.3	6.5	2.4	100.0	3.73	33.8	36.8	25.6	2.7	1.0	100.0	4.00
자녀관계	32.9	39.0	24.4	3.2	0.6	100.0	4.00	36.6	37.0	23.2	3.6	0.5	100.0	4.06
배우자의 부모 관계	16.4	31.4	40.8	8.4	3.0	100.0	3.50	23.6	33.0	38.9	4.6	0.9	100.0	3.75
배우자의 형제·자매관계	12.5	27.6	48.1	9.2	2.6	100.0	3.38	16.8	30.9	46.8	2.8	0.9	100.0	3.58

주: 1)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수치임.

2) 매우 불만 1점, 불만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으로 측정함.

3) 2008년 사회통계조사(통계청, 2008) 결과임.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기간이 길수록 남녀 모두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전체적으로 배우자 관계 만족도는 여성 결혼이민자 보다는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2) 자녀, 배우자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결혼이민자들의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여성 4.42점, 남성 4.5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 연령별로는 20~

30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40~50대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50세 이상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3.85점,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4.18점이었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3.77점이었으며, 남성 결혼이민자는 4.08점으로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관계 만족도 역시 여성 결혼이민자들보다 남성 결혼이민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연령에 따른 배우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관

표 13. 결혼이민자의 혼인특성별 배우자관계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여성 결혼이민자			남성 결혼이민자		
	평균	표준편차	(분석대상수) ¹⁾	평균	표준편차	(분석대상수) ¹⁾
전체	4.05	0.900	(108,919)	4.40	0.787	(8,566)
배우자 만남 경로						
결혼중개업	3.97	0.925	(29,634)	4.17	0.751	(222)
기타	4.07	0.882	(79,286)	4.40	0.791	(9,314)
결혼유형						
부인, 남편 모두 초혼	4.08	0.888	(70,496)	4.44	0.785	(5,353)
부인 초혼, 남편 재혼	3.97	0.938	(11,189)	4.37	0.842	(557)
부인 재혼, 남편 초혼	4.05	0.890	(7,518)	4.38	0.818	(1,196)
부인, 남편 모두 재혼	3.99	0.891	(19,717)	4.33	0.773	(2,430)
결혼기간						
1년 이하	4.25	0.819	(20,627)	4.55	0.749	(1,118)
2~3년 이하	4.14	0.858	(32,258)	4.46	0.752	(2,374)
4~5년 이하	3.99	0.881	(20,629)	4.41	0.757	(1,968)
6~10년 이하	3.89	0.941	(18,877)	4.32	0.848	(1,973)
11년 이상	3.82	0.953	(10,405)	4.36	0.804	(1,212)

주: 1)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수치임.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14.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자녀, 배우자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여성 결혼이민자			남성 결혼이민자		
	평균	표준편차	(분석대상수) ¹⁾	평균	표준편차	(분석대상수) ¹⁾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4.42	0.737	(69,621)	4.57	0.664	(4,850)
24세 이하	4.52	0.725	(15,044)	4.43	0.645	(52)
25~29세	4.51	0.692	(15,927)	4.65	0.540	(476)
30~34세	4.45	0.701	(14,679)	4.67	0.608	(928)
35~39세	4.35	0.738	(13,169)	4.61	0.635	(1,318)
40~49세	4.20	0.788	(9,189)	4.54	0.667	(1,533)
50세 이상	4.06	0.867	(1,612)	4.32	0.824	(543)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3.85	0.951	(82,221)	4.18	0.880	(6,365)
24세 이하	3.95	0.945	(20,866)	4.23	1.018	(148)
25~29세	3.93	0.937	(19,818)	4.28	0.864	(821)
30~34세	3.83	0.953	(16,339)	4.26	0.874	(1,560)
35~39세	3.75	0.947	(13,502)	4.14	0.908	(1,602)
40~49세	3.70	0.956	(10,328)	4.14	0.846	(1,777)
50세 이상	3.69	0.920	(1,368)	4.04	0.875	(457)
배우자의 형제·자매관계 만족도	3.77	0.940	(97,349)	4.08	0.914	(7,404)
24세 이하	3.88	0.932	(21,844)	4.08	1.051	(152)
25~29세	3.85	0.921	(21,092)	4.26	0.903	(816)
30~34세	3.75	0.952	(18,182)	4.18	0.939	(1,537)
35~39세	3.68	0.938	(16,516)	4.08	0.906	(1,758)
40~49세	3.66	0.924	(15,640)	4.02	0.895	(2,258)
50세 이상	3.67	0.919	(4,076)	3.92	0.872	(883)

주: 1)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수치임.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계만족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 만족도가 낮아졌다.

3) 모국가족과의 관계

(1) 모국가족과의 관계유지

결혼이민자들이 모국에 있는 가족과 지난 1

년간 전화 통화나 편지, 이메일 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하여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알아본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는 61.6%가 ‘일주일에 한번 또는 그 이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남성 결혼이민자는 51.8%로 모국가족과 자주 연락하는 정도는 남성보다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더 빈번하였다.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현재 유

표 15.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별 모국가족과 접촉빈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1년에 한번	1년에 2~3번이상	한달에 1~2번	1주일에 한번	1주일에 두번 이상	계(수) ²⁾
여성 결혼이민자	3.5	1.2	4.6	29.1	27.9	33.7	100.0(114,725)
유배우	3.2	1.1	4.5	28.8	28.1	34.4	100.0(109,123)
사별	9.3	4.1	7.8	40.5	21.0	17.4	100.0(1,134)
이혼	7.8	4.0	8.2	32.8	25.6	21.6	100.0(4,229)
남성 결혼이민자	5.2	2.3	8.1	32.7	26.2	25.6	100.0(10,112)
유배우	4.8	2.3	7.8	32.7	26.4	25.9	100.0(9,542)
사별 ¹⁾	-	-	-	-	-	-	-
이혼	13.2	2.2	14.4	35.1	19.4	15.7	100.0(319)

주: 1) 사별한 남성의 경우 실제 응답 사례수가 5명 이하인 범주가 많아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2)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수치임.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배우자인 경우 사별 또는 이혼한 결혼이민자들 보다 모국 가족과 더 빈번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사별 9.3%, 이혼 7.8%와 이혼한 남성 결혼이민자의 13.2%는 모국 가족과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국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한국초청

부모나 형제·자매의 한국 초청과 관련하여 여성 결혼이민자는 47.7%, 남성 결혼이민자는 37.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사별(51.4%)이나 이혼(50.6%)을 경험한 여성이 현재 유배우인 여성(47.6%)보다 부모나 형제·자매를 초청한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현재 유배우인 남성(38.3%)이 사별(18.2%)이나 이혼(9.7%)보다 부

모나 형제·자매를 초청한 경험이 더 많았다.

(3) 국내 모국가족 연결망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 43.8%가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37.2%가 그런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고 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국내 가족이나 친척 연결망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 59~63%가 국내에 모국가족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유배우 여성들의 경우 그 비율이 다소 낮았다(42.9%).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사별 44.7%, 이혼 49.2%으로 현재 유배우인 남성(36.0%)보다 국내에 모국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살펴보

표 16. 결혼이민자의 성별 혼인상태별 모국의 부모나 형제·자매 한국초청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여성 결혼이민자		남성 결혼이민자	
	경험률	(분석대상 수) ¹⁾	경험률	(분석대상 수) ¹⁾
전체	47.7	(113,468)	37.1	(9,929)
유배우	47.6	(107,870)	38.3	(9,372)
사별	51.4	(1,158)	18.2	(66)
이혼	50.6	(4,216)	9.7	(329)

주: 1)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수치임.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17.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별 국내 모국가족 연결망

(단위: %)

구분	국내거주 가족친척	3개월 이상 국내 거주 가족 또는 친척					
		아버지	어머니	남자형제	여자형제	전배우자의 자녀	기타 가족/친척
여성 결혼이민자	43.8	7.9	13.3	10.2	15.6	3.5	14.8
유배우	42.9	8.0	13.3	9.8	15.1	3.3	14.5
사별	58.7	4.6	8.0	15.9	21.2	10.2	22.7
이혼	62.7	6.6	12.9	18.8	25.6	9.2	20.1
남성 결혼이민자	37.2	5.2	9.5	13.4	12.0	2.3	13.4
유배우	36.0	5.1	8.9	13.2	12.1	2.2	12.9
사별	44.7	3.9	11.8	6.6	6.6	7.8	15.8
이혼	49.2	3.9	12.9	17.9	12.1	1.3	18.9

주: 1)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수치임.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여자형제가 있는 비율이 1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타 가족이나 친척(14.8%), 어머니(13.3%), 남자형제(10.2%)의 순이었다. 남성 결혼이민자는 남자형제 또는 기타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사람이 각각 1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여자형제(12.0%) 순이었다.

4. 종합논의 및 정책방안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유배우이면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 중 가정불화로 인한 비동거율이 20% 정도나 되어 이혼율이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혼·별거의 이유로는 성격차이, 경제적 무능력, 외도 외에 학대와

폭력,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정도 상당 비율 나타나고 있어 원만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의 부부간 결혼희수로 본 혼인유형에 있어서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인 경우는 65.0%로 전체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 낮았으며, 부인 또는 남편이 재혼이거나 부인, 남편 모두 재혼인 비율이 전체 한국인 보다 높아 결혼이민자의 결혼안정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은 일반 한국인 가족보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가족관계는 일반 한국인 가족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외국인으로서 한국가족의 일원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부의 역할에 대한 문화차이를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역할기대와 관계특성까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결혼이민자들이 한국가족의 특성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다문화가족 관계 이해증진은 결혼이민자 자신 뿐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와 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도 서로의 가족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때만이 가능하다.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

도는 일반 한국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남성 결혼이민자들보다 낮으나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최근 결혼이민자들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결혼이민자가족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위기의 가족인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혼이민자 가족 중에서도 초혼가족보다는 재혼가족일수록, 결혼중개업을 통하여 결혼을 하게 된 경우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결혼중개업으로 인한 부적 영향은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의 모국가족과의 관계유지 및 국내 연결망 형성에 관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남성 결혼이민자들에 비해 모국가족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모국가족을 국내로 초청하는 비율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가 국내 모국가족 연결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다민족·다인종 집단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결혼과 가족생활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올바른 부부관계 상 정립 및 전문적인 상담을 확대 실시한다.

다문화가족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갈등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갈등이나 문제가 심화될 경우 가족해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올바른 부부관계 상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가족갈등의 해소 및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가족 상담을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재혼가족 대상의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결혼이민자의 혼인유형에 있어서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이기는 하나 일반인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며, 부인 또는 남편 중 한쪽이 재혼이거나 부인, 남편 모두 재혼인 비율이 일반인 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재혼으로 구성된 가족형태는 다양하여 재혼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 교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결혼이민자들 자신의 문화권에서의 가족관계 특성을 한국가족관계와 비교 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가족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필리핀, 몽골, 베트남 등 몇몇 국가에서 예비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체계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준비과정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철저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각종 정보제공 및 사전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만난 경로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301호)을 일부 개정(2010. 5. 17 일부 개정)하여 2010. 11. 18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¹²⁾ 따라서 향후 동 법의 시행을 통해 불법결혼중개를 차단하고, 결혼중개 시 당사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사전제공 등 결혼중개과정과 비용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

12) 동 법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제24조). 또한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회비, 그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0조 1항),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제공토록 정하고 있음(제10조 2항). 이외 결혼중개업자는 거짓,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음(제12조).